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부천역지하도상가 점포 계약을 일반입찰로 전환 운영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존 임차인의 수의계약 갱신 조항 삭제

나. 2년의 계약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 이메일 : kmhhuni80@naver.com
- 팩스 : 032-662-8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전화 032-340-5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차인의 선정) ① <u>임차인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사가 그 관리 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과 지하도상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u>	제5조(임차인의 선정) ① <u>임차인의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대부 계약) ① (생략) ② <u>지하도상가의 점포 대부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점포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u>	제9조(대부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점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임차인은 「공유재산 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